

전주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가단280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온성욱, 정제훈, 추길환

피고B

변론 종결 2023. 5. 24.

판결 선고 2023. 7. 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4.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4. 24. 접수 제469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 사단법인 D에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C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겠다는 의미로 1억 5천만 원을 2014. 1. 29.자로 차용하였으며 2015. 1. 29.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20.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79호로 C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4. 확정되었다.

다.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0. 4.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0. 4. 24. 접수 제46903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이미 C에게 보증채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거나 물상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물변제나 물상담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특정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 초과 상태의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C이 E요양병원에서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이어서 3,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김영희

별지